

사랑과 정성을 다해 모시는 소나무요양원입니다.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친자식처럼
정성을 다해 극진히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소나무요양원

홈페이지 <https://sonamusilver.kr/>

전화번호 032-529-0085

도로명주소 인천 부평구 평천로142번길 50 (청천동)



안녕하십니까, 소나무요양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소나무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인 치매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보건, 의료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회복과 사회적 재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가족 기능의 강화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화된 프로그램과 전문서비스 및 양질의 영양공급, 건강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생활을 통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심신의 안정감을 통해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부여함으로써 어르신 및 부양가족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나무요양원 직원일동

소나무요양원 기관정보

기관 상세정보

요양기관	소나무요양원
기관기호	12823700037
지정일자	2013.02.15
전화	0325290085
홈페이지	https://sonamusilver.kr/
주소	인천 부평구 평천로 142번길 50 (청천동)
건축면적	대지면적 222.80m ² , 건축면적 152.26m ²
급여종류	시설급여
정원	43

2022년 시설입소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1인당 1일 시설수가 (20%본인부담금)		74,850 (14,970)	69,450 (13,890)	64,040 (12,808)
월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20%) 일반수급자	419,160 (28일) 449,100 (30일) 464,070 (31일)	388,920 (28일) 416,700 (30일) 430,590 (31일)	358,624 (28일) 384,240 (30일) 397,048 (31일)
	(12%) 간경대상자	1일=8,982원 258,840 (30일)	1일=8,334원 250,020 (30일)	1일=7,685원 230,544 (30일)
	(8%) 간경대상자	1일=5,988원 179,640 (30일)	1일=5,556원 166,680 (30일)	1일=5,123원 153,696 (30일)
	비급여	1일 7,500원 (끼니 당 2,500원)	30일 기준 식·간식 대=225,000원 30일 30,000원	
		식대 1일 1,0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시설 / 설비 현황

지하1층	조리실, 식당
1층	사무실, 상담실
2층	프로그램실, 휴게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특별실
3층	침실 4, 화장실 2
4층	침실 4, 화장실 2
5층	침실 4, 화장실 2
6층	침실 4, 화장실 2
7층	산책로 정원, 세탁실

찾아오시는 길

- 대중교통 버스이용
 - 일반버스 : 2, 14-1, 35, 760, 760-1
 - 좌석버스 : 103
 - 마을버스 : 551, 586
 - 시외버스 : 88(박촌 ↔ 서울고속터미널)
 - 삼화고속 : 서울역 ↔ 산곡동
- 지하철 이용
 - 인천1호선지하철 : 갈산역 하차(도보 15분 거리)
 - 지하철7호선 : 산곡역 하차(도보 17분)
- 자가용이용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42번길 50
- 주차시설현황
 - 건물뒤 주차장 4대 주차 가능

운영규정 개요

1.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급여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5.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변경 시와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시 변경할 수 있다.

6. 시설물 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해야 한다.

7. 시설급여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건강/케어 정서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8. 의료서비스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

9. 특별보호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10.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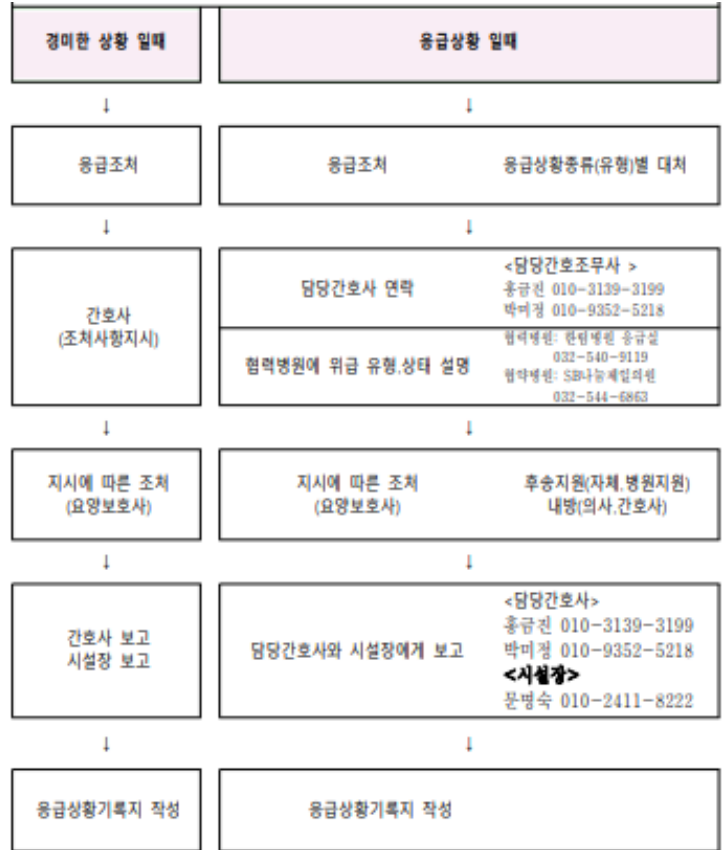
신원인수인은 입소어르신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질 높은 서비스'와 '시설의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갖으며, '입소비용납부'와 '어르신 인적사항 변경 시 통보', '필요시 대리인 선정', 병원에 입원시계약서에서 정한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 그리고 '기타 시설의 규칙 준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소나무요양원 기관정보

종사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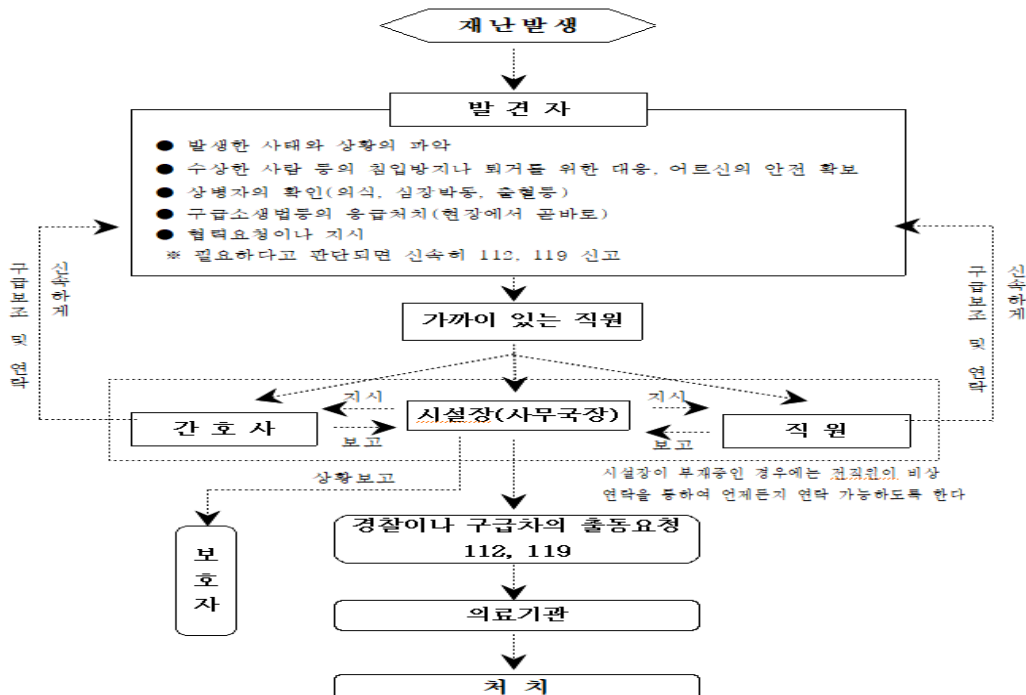
감염예방교육
낙상 예방교육
욕창 예방교육
응급상황 대응교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치매예방교육
운영규정 교육
직원교육
종사자윤리지침
개인정보 보호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교육
재난상황대응훈련

응급상황 발생시 메뉴얼



* 경미한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

재난상황 발생시 메뉴얼



소나무요양원 둘러보기



인천 부평구 소재지의 입소정원 43명의 노인요양원입니다.



각 층마다 3개의 침실과 거실처럼 느껴지는 공동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침실마다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옥외 정원



요양보호사 휴게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사실

소나무요양의 특징

- 도심 내 주거지역에 위치함으로서 어르신들의 입소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 완화
 - 인천 부평구 소재지의 노인요양시설로 가족과의 접근성이 좋음
 - 대중교통의 원활한 지리적 위치로 가족 및 지역사회 자원의 접근성 확보
- 어르신들의 심리적 요인뿐만아니라 안전성까지 고려한 내부설계로 정서적 안정감 극대화
 - 집과 같은 생활 구조로 대규모 단체 생활이 아닌 소규모 가족형 분위기가 이루어져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
 - 각 침실마다 화장실이 붙어있어 불편감을 빠르게 해소하거나 이동 시 어려움 해소
-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 보전
- 장기근속 장기요양요원에 의해 제공되는 질높은 요양서비스
 - 장기근속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의 서비스
- 응급상황발생 시 주변 대형병원 의료기관과 신속한 연계
 - 자동차로 5~15분 거리에 세림병원, 한림병원, 세종병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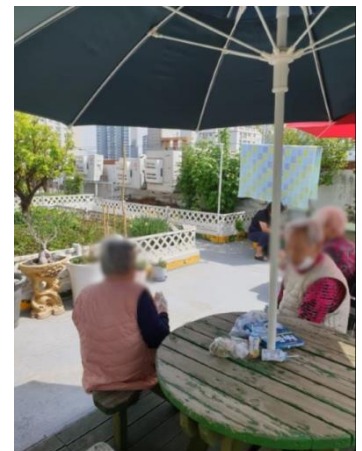


한림병원



인천세종병원

- 소나무요양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연계행사 : 설,추석 맞이 행사
 - 가족참여프로그램 진행 :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행사
 - 생일잔치
 - 치매예방프로그램
 - 여가프로그램
- 독자적 휴식공간인 하늘공원에 텃밭, 정원시설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정서함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I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II-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III-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②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입소 대상자

I - 장기요양 1, 2등급 수급자

II- 장기요양 3, 4등급 수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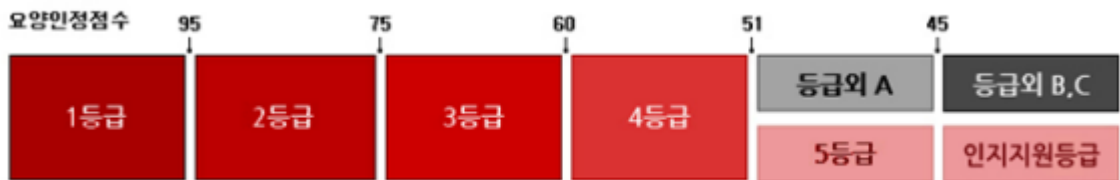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III-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입소절차 및 입소시 준비물

I - 입소절차

- ① 내방 또는 전화상담
- ② 입소결정후 입소계약서 체결

II- 입소시 준비물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서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③ 건강진단서 (감염병 건강진단서, 흉부X-Ray+ 혈액검사 필수, 입소시 제출)
- ④ 의사처방전 및 복용약
- ⑤ 개인의류 및 간단한 소지품

◎급여서비스 안내

구분	세부 서비스명
생활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도움 ◦신체청결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증진 ◦산책(외출)동행
치매예방 활동 및 여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지원 ◦인지 및 정신 기능 향상 ◦치매예방 ◦여가활동 지원 ◦지역사회 초청 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물리치료 및 재활 활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회복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통증치료
건강간호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찰 및 측정 ◦기초건강관리 ◦건강관찰 및 측정 ◦고혈압 당뇨 중풍 치매 등 만성질환관리 ◦씹는기능 약화 관리 ◦배설관리 ◦욕창관리 ◦장루, 유치도뇨관, 비위관 관리 ◦감염관리 ◦촉탁의 지원 및 의료기관 진료 지원 ◦응급서비스
임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종징후 모니터링 및 어르신 특별 보호 ◦임종시 대응서비스 ◦특별침실관리

◎코로나19 대응 - 제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유행/인원 제한	권역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방역·의료대응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자원 지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 체계 한계 도달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이용인원 자율조정 (지자체 및 시설 판단)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

▶ 제1단계(억제단계):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설운영

- 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고 비대면 서비스 병행 및 시간제-사전예약제 권장
- ② 생활시설은 외출·외박 제한적 가능, 1일 인원 통제하여 면회 실시

▶ 제2단계(지역유행단계): 방역 강화 및 활동 제한 ① 신체활동 제한,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 예약제 전환

▶ 제3단계(권역유행단계): 이용전원의 50% 이하(최대100인) 운영 ①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② 생활시설은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제4단계(대유행단계): 이용전원의 50% 이하 운영

- ① 지자체 판단하에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 축소 또는 중지여부를 결정 ②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코로나 감염병 관리책임자

- ① 건강방역관리책임자(의료인): (정) 문명숙 시설장 (부) 한성연 사회복지사
- ② 직원관리전담자: (정) 홍금진 간호실장 (부) 박미정 간호조무사
- ③ 격리실: 2층 특별침실